

구비설화에 나타난 노인 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 수준과 가족관*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양아들이 효도하기/411-5)’ 유형으로 본

‘재산증여’와 가족의 해체/재구성

최기숙**

〈차례〉

1. 노인의 생존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 수준과 욕구 표현 공간으로서의 구전설화
2.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양아들이 효도하기)’의 문화적 독해를 위한 논점 분석 및 자료 현황
3. 친자와의 결별을 통해 본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에 대한 기대 수준과 노인 부모의 의사표현 방식
 - 3.1. ‘노인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불편한 잉여 가족, 재산 증여 후의 변심에 대한 ‘상상’
 - 3.2. 불효 자녀에 대한 ‘노인 부모’의 감정과 처신의 수사학: 교감과 동일시로서의 구술재연
4. 비혈연 가족의 형성고 해체·재결합 과정을 통해 본 가족 갈등의 요인과 노인 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 수준
 - 4.1. ‘입양’의 계기: 아들에 대한 기대 심리, ‘효’를 둘러싼 ‘부-자’ 관계 계약
 - 4.2. ‘친자-양자’간 갈등: 파악 계기로서의 ‘재산권 분쟁’
 - 4.3. ‘효’의 기대 수준: 혈연을 넘어선 ‘배려’와 ‘보살핌’에 대한 기대
5. ‘재산증여’를 매개로 본 노인 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 수준과 설화적 구술 규약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전통사회와는 달리 노인의 사회문화적 위상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NRF-2010-332-A000088).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이 달라짐에 따라, 자존감의 위기를 겪는 노인 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 수준과 가족관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담론의 지형을 재구하기 위한 자원탐색적 연구로서의 시작되었다. 특히 ‘재산증여’를 매개로 한 노인 부모와 자식 세대의 관계 변화에 주목하여, 가족 관계의 질적 변화요인으로서의 돈의 문제, 맹목적인 혈연적 유대보다는 부모에 대한 충실성과 보호가능성을 담보하는 효에 대한 질적 기대가 강조되는 노인의 심리와 상상력의 추이에 주목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노인의 자식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상적 내러티브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구비설화’의 유형인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양아들이 효도하기/411-5)’ 유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친자’의 불효는 부모와의 동거가 장기화되거나 재산 증여를 기점으로 노골적으로 행동화되었다. 자녀는 재산 증여의 정도에 따라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기증된다는 판단을 내세웠지만, 심리적으로는 모두 자신을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의 피해자로 위치지음으로써, 불효에 대한 심리적 면죄의 논리를 생성했다.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한 부모는 자녀로부터 ‘잉여 가족’으로 처우되었으며,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부모는 이로 인한 고통을 내적 감정의 문제로 수용했으며, 가출할지언정 자녀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효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해당 설화 유형에서 노인 부모는 자신을 불편해하는 자식과의 동거보다는 유랑·결식·자살을 택함으로써 사실상 가족의 해체를 행동화했다. 나아가 자신을 환대하는 타인의 처신을 ‘진정한 효’로 간주하고 양자로 삼음으로써, 가족의 재구성을 도모했다. 그 과정에서 ‘양자’가 ‘자식 사랑’보다 ‘효’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극단화된 불안 심리를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양자와 친자 사이에 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친자의 요구와 계약에 의해 파악되는 가족의 해체가 발생했다.

해당 설화의 구연자중 90%가 60대 이상의 노인인 만큼, 여기에는 노인 세대의 효에 대한 기대 수준과 자식의 효심에 대한 불안 심리가 투영된 상상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당 설화는 노인 부모에게 ‘진정한 효’란 자식이 그 자식의 생명보다 부모에 대한 관심과 애정, 배려를 우선

시하는 수준의 봉양과 존중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재산 증여가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의 매개로 작용함으로써, 혈연 우선주의를 넘어선 인간적 애정에 대한 기대와 돌봄의 가족 관계에 대한 기대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어: 구비설화, 효도, 불효, 가족, 노인, 재산증여, 가족갈등, 양자, 친자, 혈연

1. 노인의 생존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 수준과 욕구 표현 공간으로서의 구전설화

현대사회는 의학과 복지 정책의 발달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¹⁾ 고령화로 인한 수명 연장은 현대인들에게 ‘삶의 주기’ 변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수반하는 삶의 형태와 인생관에 대한 재성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둘러싼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하는 한편, 은퇴 후의 ‘삶의 질’의 문제, ‘건강한 삶’과 ‘행복’의 문제에 대한 성찰과 해결을 개인적·사회적 문제로 제기한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고령화는 각종 복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90년대 이후로 미디어가 확산시킨 ‘동안 열풍’이나 ‘젊고 아름다운 몸’에 관한 과도한 관심, 몸의 조형과 성형을 통한 시각적 정체성의 과시는 늙음의 징후들을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것, 무용하고 멀리해야 할 현상으로 간주하는 역효과를 수반한다.²⁾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간의 ‘노

1)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7’에 따르면 한국남성의 평균수명은 75세, 여성은 82세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5세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80년에는 전체 인구의 3.8%였으나 2000년에는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05년에는 9%를 넘게 되며, 2018년에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이신숙, 『노년기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9집, 2009, 549쪽).

2) 이신숙은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대중매

화'는 질병, 쇠약 등 우환의 이미지와 결부되고, 노인은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구호'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사회에서 노인 세대가 누려온 가부장, 어른으로서의 권위는 위협받게 되고 노인은 심한 자존감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노인 세대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과 태도를 표현할 공적 장이 부재하거나, 사회 변화에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공적 기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경우, 노인의 인권은 철저하게 동거 자녀에게 위임되거나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대적으로 노인 문제에 접근할 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못지않게 노인은 사회적 '잉여 존재'로 간주될 위험성을 안게 되는 것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진행되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노인 세대'의 사회적 적응 및 사회적 지위 변화를 문제적으로 발생시킨다. 그러나 고령 시대의 '노인 급증'이나 '노화'의 문제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로 간주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태도나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요건이기도 하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삶의 질'에 관한 문제가 중요시되며, 학문으로서의 '노년학(Gerontology)'이 생성되고³⁾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⁴⁾에

체의 영향도 빠뜨릴 수 없음을 지적하고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우며 무기력하고 보기 싫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을 문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2009, 551쪽). 김홍중은 '스스로의 몸을 조형하고 성형하고 개조'하는 태도를 '동물적 삶'으로 규정한 바 있다(『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59쪽).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여성의 '잘 나이들기'가 인문학적 차원에서 공론화되기도 했다(『고전여성문학연구』 23집의 기획 주제 '여성의 잘 나이들기', 2011)

- 3) 노년학은 인간 노화의 원인이 되는 생물학·심리학·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노년 그 자체보다는 '노화과정(process of aging)'을 연구하는 역동적 연구 분야다(최성재·장인협, 2006). 원영희·모선희, 『한국노년학의 사회적 연구동향 분석』, 『한국노년학』 28권 4호, 한국노년학회, 2008, 753쪽에서 재인용함.
- 4) 장휘숙에 따르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세계보건

대한 학적 관심도 제기되었다.⁵⁾ 이와 더불어 노년층이 인지하고 경험하는 삶의 질,⁶⁾ 신체적·심리적 노화의 문제, 가족 관계 지위, 역할 전환, 고독·소외·자살 등 일탈 문제 등이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⁷⁾ 2010년 1월, 미디어에 보도되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가 자연 상태에서 사망한 장기 입원 의식불명 환자 김할머니의 ‘존엄사’ 문제나 최근의 ‘말기 환자 생명연장 치료 중단(연명 치료 중단)’을 둘러싼 논쟁(이는 단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논쟁은 아니지만, 노인 대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은 노인의 인권이 이미 주체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
- 기구(WHO)에서 이를 좋은 신체적(기능상태), 정신적(정서적, 인지적 상태) 및 사회적 건강(생산적 참여)으로 정의했다고 한다. Phelan과 Anderson, LaCroix 및 Larson(2002)가 미국 노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일반 노인들은 성공적 노화를 신체적·기능적·심리적·사회적 건강을 포함하는 중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문항으로 한국 노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미국과 상이했다. 즉 한국노인들은 미국노인들과 비교하여 개인 자신의 가치관이나 표준은 물론 자신의 욕구만족이나 생활만족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일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길-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전략』,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및 워크숍』, 2007, 15~16, 22~23쪽). 이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성공적 노화’ 및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지역성의 차이와 더불어 ‘역사/시간적 차이’에 대한 고려를 제안하고자 한다.
- 5) ‘노인’ 및 ‘노년기’에 대한 연구는 노인 주거 및 시설을 주제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노년기 가족관계·적응·경제·건강·여가·의생활·노인 및 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노인복지서비스·죽음·기타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한다(송헌애,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과 ‘노년기’ 연구-가정학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권 3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8, 11~12쪽).
- 6) 현대 한국에서 노인의 삶의 질 연구 경향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척도 개발·삶의 질에 대한 지표 구성 및 분석에 대한 논의·삶의 질의 모형 구성·노인의 삶의 질 개념에 대한 연구·노인의 삶의 질 예측 변인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뉜다. 대체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건강·심리적 안녕·경제적 안정·사회적 관계·사회활동·주거·사회 환경의 7차원에 대한 접근으로 수행된다(이경옥·허소영, 『포커스 집단을 통한 도시 노인의 삶의 질 개념 연구』, 『한국노년학』, 28호 2권, 한국노년학회, 2008, 269쪽; 282쪽).
- 7) 노년학의 연구 동향에 관해서는 원영희·모선희(2008)의 논문을 참조.

이와 더불어 가족에 의한 노인의 유기나 학대와 구타는 종종 미디어의 문제적 뉴스거리로 보도되지만, 근원적 해결 방안이나 대안책이 제기된 바는 없다. 또한 질병이 있는 노인에 대한 격리 치료나 실버타운 거주 등은 노인은 물론이고 동거가족의 현실적 삶을 지탱하는 대안책으로 강구되지만, 이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나 주거 형태 및 가족구성원과의 동거 및 친밀도에 대한 이해는 상이하게 나타났다.⁸⁾ 오히려 이러한 현대적 시설물이나 주거 문화 형태는 노인 세대가 언제든 늙음의 징후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음을 문제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⁹⁾

이 논문은 고령화라는 현대적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노화’나 ‘노인’이 문제적으로 당면했던 현실적 문제를 다룬 구전설화를 대상으로, 늙음의 문제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 및 노인 세대의 생존을 둘러싼 가족에 대한 기대 수준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구전설화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늙음’의 문제와 ‘노인 부모’가 경험하는 가족 해체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설화적 해결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노인 세대가 원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과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인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문제 해결 과정의 맹점이나 모순 지점을 찾아 노인 문제를 가족 장과 사회적 장 안에서 재사유하는 계기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의 위

8) 통계청이 2002년에 3만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77.2%)은 “자녀집이나 양로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함으로써, 독립가구를 유지하면서 애정적 관계를 중시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조병은,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현황과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 61쪽).

9)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나남, 오성근 옮김, 2003)에서 근대적 ‘병원’이 질병의 격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 집단에 대한 환상적 시각을 전파하는 과정을 규명하고 근대적 미시 권력 체계를 공간적으로 재규정한 바, 현대사회에서 이는 ‘실버타운’ 또는 ‘노인 보호 시설’을 통해 ‘호화로운’, ‘치료와 보호’라는 명목으로 치장된 채 새로운 ‘격리’ 요건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학력·지역·가족관계·성별·병력 등 실버타운의 입주 여건에 따른 노인층 삶의 위계화는 별도의 ‘문제’다.

상 변이와 더불어 전통사회에서 노인을 사유하는 방식의 한계나 고정성의 문제를 재사유화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 자료로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로 약칭함)를 택했다. 『대계』는 설화 수집 단계에서부터 노인 세대로부터 옛이야기를 채록하여 잊혀가는 전통 설화를 수집하고자 했기 때문에, 참여자 중 절대 다수가 노인 세대이다. 따라서 『대계』에 수록된 이야기의 관점은 노인에게 의해 조율되거나 구술 주체로서의 노인이 이미 ‘이야기의 세계’에 동의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많다. 구술 행위 자체가 구술 대상이나 담화적 정황에 대한 ‘동의’와 ‘관심’의 표현이며,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동의의 체계’이자 암묵적 ‘가치 규약의 체계’이기 때문이므로, 노인이 구술한 이야기 중, 특히 노인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에 노인의 음성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물론 구연자가 구술하는 이야기와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비평적 관점’에서 구연하는 경우에는, 가치 규약이나 담화상의 합의 내용에 관한 비판적 거리두기가 발생한다고 보고, ‘메타적 차원의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계』에 노인이 스스로 노인 문제를 구술한 이야기는 많다. 그 중에서도 이 글에서는 자녀의 불효로 노인이 가출을 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다가, 자신을 돕고 배려하는 사람을 만나 양자로 맞이함으로써 비혈연 가족을 구성하는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양아들이 효도하기)’유형(411-5)의 설화 총 37편을 분석 대상으로 택했다. 이 유형의 설화에서는 노인 세대가 자녀 세대와 뜻이 맞지 않아 가출하거나 쫓겨남으로써 자녀와 동거가 파기되고, 사실상 가족 관계의 해체가 발생한다. 이후 노인은 뜻에 맞는 양자를 우연히 만나거나, 재산권을 둘러싼 친자의 견제로 집을 나갔던 효성스런 양자와 우연히 해후하여 가족을 재구성하게 된다.¹⁰⁾

10) 해당 설화에 대한 연구는 이인경, 「구비설화를 통해 본 老後의 삶과 가족」(『구비문학연구』 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에서 연구된 바 있다. 연구의 초점이 ‘자식의 효’가 아니라 ‘노인의 삶의 태도와 욕망’에 있는 점, ‘가족 개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전제한다는 점은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텍스트 해석의 층위에 차

이러한 서사적 흐름을 지닌 해당 유형의 설화에서는 노인의 자녀 세대에 대한 기대와 욕구 수준이 ‘혈연 가족의 해체’와 ‘비혈연 동거 가족의 재구성’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에는 가족간 상호적 이해관계와 요구 내용이 간여되는데, 주로 부모-자식 관계 및 친자-양자 관의 관계 갈등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구연자와 세대적으로 동일시하는 노인의 입장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텍스트 분석의 초점을 노인 부모에게 두고, 노인이 최종적인 가족으로 선택하는 계기나 과정에 주목하여, 노인 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수준과 가족관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해당 유형은 연구자가 『대계』를 편집하면서 붙인 바대로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또는 ‘양아들이 효도하기’라는 제목이 환기하는 바, ‘남아선호사상’의 문화 관습을 재현한 설화로 간주되거나, 단순한 효도 설화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서사 전개 of 흐름을 따라 읽는 재현의 독법에서 나아가, 구술된 이야기를 하나의 문화론적 텍스트로 보고, 그 안에 내재된 노인-자녀의 상호적 관계 인식 및 상호적 기대를 독해하는 입장을 취한다. 노인 문제에 관한 노인 세대의 구술이라는 점에서 노인의 직접적 음성과 서사 구성에 개입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판독할 수 있다는 담화 조건을 살리는 동시에, 노인이 속한 가족 장에서 상호적으로 형성되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론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고자 한다.¹¹⁾

이가 있어 주제 분석의 내용과 방향은 상이하다. 같은 설화 유형을 다루었고 주제 분석의 차원이 문화적 차원에서 수행된 점은 같지만, 분석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해석 결과가 상이해지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세부 내용은 해당 본문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각주를 통해 비교하여 제시한다.

- 11) 기록된 설화 내용을 통해 이야기관의 상황이나 화자와 청자의 반응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기록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구연 설화 연구가 갖는 일정한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컨텍스트 분석을 지향하고자 했다.

2.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양아들이 효도하기)’의 문화적 독해를 위한 논점 분석 및 자료 현황

『대계』의 유형분류 ‘411-5’번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양아들이 효도하기)’에 해당하는 총 37편의 설화 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411-5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양아들이 효도하기) (총 37편)								
A 딸보다 양아들 (총 30편)								
세부	번호	대계 번호	시작 쪽수	각편 제목	제보자 정보			
					성명	성별	나이	지역
양손자 있음	112)	1-2	329	양자의 효행	최연희	여	68	경기 여주
	2	2-2	764	수양아들의 효성	박광철	남	46	강원 춘성
	3	2-8	143	딸 셋이 수양 아들만 못하다	고만성	남	80	강원 영월
	4	3-2	85	친딸보다 나은 수양 아들의 효심	전재명	남	51	충북 청주
	5	3-2	240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의 효심	남형우	남	75	충북 청주
	6	3-4	75	하늘이 표창한 양아들의 효심	오세옥	남	76	충북 영동
	7	4-4	677	세 딸보다 나은 양아들	김재식	남	76	충남 보령
	8	4-5	105	양자보다 못한 친딸	천준기	남	66	충남 부여
	9	5-3	457	딸보다 더 효도한 당질	최경호	남	65	전북 부안
	10	6-8	174	딸보다 잘하는 양아들	최동일	남	78	전남 장성
	11	8-6	74	마고자 이야기	임기복	남	72	경남 거창
	12	8-8	326	소용없는 딸들	민영만	남	47	경남 밀양
	13	3-3	790	딸 삼형제보다 나은 양자(손자소생:○) ○	윤만복	남	69	충북 단양
	14	6-12	1020	양아들의 효성 ○	유영두	남	75	전남 보성
	15	7-16	638	딸보다 나은 양며느리의 효성 ○	임동선	여	70	경북 예천
	16	2-6	35	양자의 효행 ○ ◆ (금 획득:◆)	양덕성	남	71	강원 횡성
	17	7-5	447	생김장 얻은 양아들 내외 ○ ◆	이원희	남	62	경북 성주
	18	7-9	1056	딸들의 불효와 양아들의 효성 ○ ◆	임치락	남	64	경북 안동
	19	7-16	551	친딸보다 효성 근지한 양아들 내외 ○ ◆	곽종상	남	63	경북 선산
	20	8-2	464	양자 효부 ○ ◆	장종천	남	64	경남 거제
	21	8-3	323	양자 효자 ○ ◆	이옥인	여	68	경남 진양
	22	5-2	556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	김현녀	여	86	전북 완주
	23	7-16	428	친딸보다 양아들이 더 낫다 ◆	박기옥	남	69	경북 선산
양손자 없음	24	3-2	64	딸 열이 양아들 하나만 못하다(X) ◆ (딸)	조선귀	남	67	충북 청주
	25	3-2	405	양아들의 효심 (X) (딸)	이화옥	여	69	충북 청주
	26	3-4	750	양부를 잘 모신 효자 매한손 (딸)	유광연	남	73	충북 영동
	27	4-5	617	양아들이 딸보다 낫다 (딸) ◆	김기조	남	68	충남 부여
	28	5-7	224	남의 부모 모서서 부자된 세 딸 ¹³⁾ (딸)	이호열	남	88	전북 정읍

	29	7-6	691	고아의 소원 (딸)	이기백	남	71	경북 영덕	
	30	8-6	101	딸보다 아들이 좋은 이야기 (딸)	고대석	남	55	경남 거창	
B. 아들보다 양아들 (총 7편)									
양손자 살해 있음	31	5-1	511	자식 잃고도 효도한 양아들 부부	오효임	여	67	전북 남원	
	32	5-7	625	친아들보다 수양아들이 더 효자	박기문	남	70	전북 정읍	
양손자 살해 없음	-	33	2-6	51	양자를 도와준 이야기 (외아들)	김태진	남	76	강원 횡성
		34	3-1	367	양자의 효도(아들 셋) ◆	김정필	남	72	충북 중원
		35	7-3	394	낳은 불효자와 얻은 효자	이돈규	남	65	경북 월성
		36	1-2	235	수양 효자 (아들보다 양아들)	박치조	남	74	경기 여주
	양부 혼인	37	7-6	650	할머니의 개가 (아들) ¹⁴⁾	신순경	여	84	경북 영덕

[표 1] 411-5 유형의 설화 분류표

해당 유형은 대체로 다음의 서사 전개 과정을 따른다.

- ㉠ 부유한¹⁵⁾ 노인 부모 세대가 딸(들)¹⁶⁾ 두었으나 ‘딸들을 출가시키면서 재산을 상속한다/양자를 들인다’.
- ㉡ 재산을 탐낸 딸들의 의지에 따라 파양한다/양자가 집을 나간다. 딸들이 부모를 서로 미루자 부모가 집을 나온다.
- ㉢ 우연히 양며느리/양자와 만나 동거 제안을 받는다.
- ㉣ ‘술에 취해 양자의 어린 아기를 살해한다. 양며느리가 이를 감싸거나 숨기려 하고 양아들도 아버지를 배려한다.’/‘양아들 내외가 효를 다해 모신다.’
- ㉤ 감동한 양부가 ‘소유했던 재산을 증여한다/딸들에게 재산을 되찾아 양

12) 이 번호는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해당 유형의 설화 총 37편에 대한 일련번호다. 이하 본문에서 설화 각편을 지시할 때는 원문자 번호로 표시한다.

13) 세 딸이 부모를 모시지 않아서 받았던 재산을 도로 빼앗기고 효성스런 양자가 차지한다는 내용으므로, 제목과 설화 내용이 맞지 않는다.

14) 이인경은 이 이야기를 ‘불효하는 아들을 떠나 재혼하기’ 유형으로 따로 분류하고 논의했다(2003, 425쪽). 그러나 여기서도 ‘양자의 효’가 제시되므로, 포함하여 논의한다.

15) ㉠에서는 재산 정도가 중간으로 설정되었다.

16) 딸이 셋인 경우가 가장 많고(②, ⑪-⑮, ⑰-⑳), 한 명(①), 두 명(⑩), 네 명(④)인 경우가 있다.

자에게 증여한다/마을에서 양자(내외)에게 효자상을 내린다/양자(내외)는 하늘이 내린 복을 받는다.’

해당 유형의 이야기는 출가한 딸들의 불효와 몰인정을 양자의 배려와 인정, 효도와 대비시키면서 효를 다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재산 증여의 형태로 실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제 구성은 대체로 딸과 양아들을 대비시키는 과정으로 구현됨으로써, ‘딸은 출가외인’이고 ‘시집간 딸은 도둑’이라는 문화적 관습에 기대어, 효성스런 양자가 친딸보다 낫다는 관념을 재생산하고 남아선호사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¹⁷⁾ 딸에 대한 불신은 ‘친딸보다 나은 양자’라는 서사적 설정을 통해, 딸에 대한 불신을 사회적으로 설득하고, 아들에 대한 재산 상속을 정당화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해당 유형의 설화 총 37편 중에서 ‘불효하는 친딸과 효성스런 양아들’의 대비를 다룬 것이 총 30편으로 81%(9~10쪽 표1의 ①-⑩)를 차지하는 것은,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하고 딸에 대한 유산 상속이 제한되어 있던 문화적 조건 속에서 상상된 서사 구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⁸⁾

그런데 해당 유형의 설화 중 7편(19%. 표1의 ⑪-⑰)은 서사 전개 과정이 위에서 논의한 ‘친딸과 양자’의 대립을 다룬 경우와 유사하면서도 대비 대상이 ‘불효하는 친자와 효성스런 양자’로 설정되었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전체로 보면 적은 비중이지만, 해당 유형의 주제나 의미 생산 경로가 단지 ‘남아선호’로 제한되지 않으며 ‘효와 불효’를 둘러싼 ‘친자와 양

17) 이인경은 ‘불효하는 딸이 이 설화에 셋이나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은, 딸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딸이란 존재는 일단 출가하고 나면 친정 부모의 노후 봉양에 無益한 존재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2003, 417쪽).

18) 전통사회에서 가족생활은 농경사회라는 경제적 구조, 효의식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직계가족구조, 가부장제도, 혈연주의 원리에 근거한 가족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부계혈연중심의 친족관계가 중시되고 부부관계보다 수직적 부자관계가 중심을 이루며 가족구성원의 연령, 출생순위, 성별에 의해 지위, 역할, 권리, 의무감이 주어지는 규범적, 의무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조병은, 2007, 59~60쪽.).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태도가 이야기에 투영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요청한다.

자'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유효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나아가 가족 관계의 유지에 있어 결코 혈연적 친연성이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가족 형태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나 기대에 의해 좌우되고, 특히 '재산 증여'라는 물질의 양도를 둘러싸고 해체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당 유형을 단순히 '효' 설화로 제한할 수 없다는 다층적 주제망의 형성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구연층의 절대 다수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서, 구연되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노인과 세대가 일치하는데, 이는 해당 설화가 가족 관계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나 요구를 투영하면서도, 특히 노인 세대의 기대 수준과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작용한다(표2 참조).

세부 유형		구연자 성비 분포		구연자 연령 분포				
		여	남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A. 딸보다 양아들	양손자 살해 O	4	19	2	1	10	8	2
	양손자 살해 X	1	6	-	1	3	2	1
B. 아들보다 양아들	양손자 살해 O	1	1	-	-	1	1	-
	양손자 살해 X	1	4	-	-	1	3	1
계 (37편)		7	30	2	2	15	14	4
백분율 환산		19%	81%	5%	5%	41%	38%	11%

[표 2] 구연자의 성비와 연령 분포표

해당 유형의 설화 분석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인공'의 몫은 '노인 부/모'세대다. 텍스트에서 이들이 인식하는 문제적 상황은 ①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것, ② 자녀와의 갈등(자식내외가 부모 봉양을 불편해 함, 부모 봉양을 미룸, 부모의 고민을 무시함), ③ 실수로 인한 양손자의 살해 등이다. 이 중에서 모든 설화에 공통된 요소는 ②이며, ①은 양자를 두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③은 양자의 진정한 효심을 확인하기 위해 동원된 요소로 볼 수 있다.

②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출을 단행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의 동거를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작용한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소홀한 대우는 ‘불효’로 간단히 인지되지만, 이를 ‘불효’라는 추상 명사로 처리하기에 앞서, 구연 설화에서 노인 세대가 구체적으로 불효라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노인의 대처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친자의 불효와 대비를 이루면서 노인 세대에게 친자를 압도하는 신뢰와 정서적 충족감을 제공하는 양자의 ‘효행’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효’에 대한 노인 세대의 구체적인 요구와 기대 수준, 나아가 가족 관계에 대한 노인의 욕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인이 효와 불효를 가늠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사회적 판단의 일치 문제나 효/불효의 수행 주체가 갖는 행동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을 통해서만이 윤리나 덕목을 추상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과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가족간 기대수준과 욕구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족 해체 과정을 통해 본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에 대한 기대 수준과 노인 부모의 의사표현 방식

『대계』의 유형분류 ‘411-5’번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양아들이 효도하기)’을 노인 부모의 입장에서 독해할 경우, 친자의 불효로 가출을 하거나 쫓겨나와 효도를 다하는 양자와 동거하며 참된 ‘가족애’(부/모의 입장에서는 ‘효’만이 강조되며, 이 점이 분석의 초점이기도 하다.)를 발견하여 노후를 의탁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해당 유형에서 ‘가족 해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노인 부모를 모시는 것을 불편해 하고 의무로 간주하지 않는 자녀 세대의 불효로 말미암은 부모의 가출이다. 둘째는 재산 증여를 둘러싸고 친자가 양자를 견제하여 과양을 유도하거나 양자 스스로 가출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다. 전자는 부모-친자 간 갈등, 후자는 친자-양자 간 갈등의 원인 및 해결과정에 대한 주목을 요한다.

3.1. ‘노인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 불편한 잉여 가족, 재산 증여 후의 변심에 대한 ‘상상’

해당 유형에서 노인 부모세대가 양(兩)부모인 경우는 매우 드물며(⑤), 대체로 배우자와 사별한 한부모 형태인데, 홀아버인 경우가 가장 많다. 이때에도 처음부터 홀아버지인 경우¹⁹⁾와 딸들을 출가시키는 과정에서 부인과 사별해 홀로 된 경우²⁰⁾로 나뉜다. 홀어머니인 경우는 가장 적는데, 이는 첫째, 홀어머니는 자녀가 없어도 홀로 독립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상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²¹⁾ 둘째, 해당 설화가 재산분배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대체로 재산 분배의 권한을 지닌 대상을 ‘가장’으로 상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자녀의 불효가 양자를 두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적 상황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홀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다고 상상된 ‘남성 노인’이며,²²⁾ 이들이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은 ‘재산 증여’로 상상된 것이다.²³⁾

19) ①, ②, ③, ⑤-⑦, ⑨, ⑬, ⑱, ⑳, ㉓ 등.

20) ④, ⑩, ⑪, ⑬, ⑲ 등. ㉒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 딸들이 박대하자 처음부터 딸편을 들었던 부인을 놔둔 채 영감이 혼자 집을 떠난다.

21) 실제로 홀아버가 딸들에게 의탁하는 경우, 이는 생계를 혼자서 꾸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구술된 경우가 있다(② ‘혼자 홀아버가 끓여 먹을 수가 없으니깐 요놈의 땅을 삼분팔 했어요. 딸 삼형제 앞으루다.’ 2-2765) 그러나 홀어머니의 경우, 살림을 스스로 꾸릴 수 있다고 전제되었으므로, 이러한 언급은 제시되지 않았다.

22) 실제로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한 통계분석적 연구에서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는 신체영역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성별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을 때 삶 전반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었고 물질, 정서 및 생산영역의 만족도도 더 높았으나, 여성노인은 배우자와 동거할 때와 혼자 지낼 때 간에 만족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정명숙은 ‘남성은 스스로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데 익숙지 않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여성의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정명숙,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7호, 2007, 인용은 266쪽). 해당 설화 유형에서는 홀로 된 남성 노인의 경우 자녀에게 의탁하는 것을 최선책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정명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노인 모두 물질적 만족도는 자녀와 동거할 때 더 높았으나, 물질만족도 이외의 요소(신체·사회·정서·생산 영역)에서는 성별과 만족도 사이에 별다른 영향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위의 논문, 같은 쪽).

자녀 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는다. 몇몇의 경우, 자녀의 불효는 원래부터의 성격 때문으로 상정되었다(①, ③). 자녀는 대체로 처음에는 부모를 환대하고 잘 봉양하다가, 동거가 장기화되면 싫은 내색을 하거나, 재산 상속 이후에 홀대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⑥ “아 동상(동생)들도 여럿이 있고 이런데, 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여생을 넘기실라는가, 아 가 갈 생각은 안하시고 저 저력한다.” (3-4:77)

⑦ 큰 딸한테 가서 뭇 달 있어봉 게여. 못 살겠어 눈치가 닳어. (...) 그래 죽은 딸한테 가서 또 뭇 달 살어 보닝개 게 역시 뭐 당체 뭐 못 살겠어. (4-4:678)

이와 달리 딸들이 부모 봉양을 거부하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봉양 거부, 또는 분담으로 간주하고 그 이유를 분석한다면 대체로 두 가지로 모아진다.²⁴⁾

첫째, 딸들은 부모가 평소에 다른 자녀를 편애했다는 생각을 하며, 더

23) 문영소·김양희는 재산상속에 대해 ‘노부모가 물적 지원을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확실한 지위를 보상받는 교환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한국가족의 재산상속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권 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9, 170쪽).

24) 이인경은 ‘화자들은 딸이 아들보다 못한 이유를 既婚여성인 친정에 대해 出嫁外人이 될 수밖에 없는 가부장제적 가족질서에서 찾고 있’으며, ‘특히 딸의 시부모인 사돈의 눈치가 보인다는 서술’이 있다고 했는데, 필자의 분석으로 보면 이는 ⑪ 한편에 한정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인경은 ‘딸들의 불효는 개인의 人性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일반화’(2003, 418쪽)했으며, ‘실상 친정 부모는 딸이 아니라 사위가 미워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보다 상세한 분석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딸들이 부모 봉양과 재산 증여의 양적 문제를 연관시켰음을 제기한 데 비해, 이인경은 ‘딸이 친정부모에게 소원해지는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재산상속권과 제사권이 남자에게만 부여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법하다’고 하여, 이야기 구조에 역사문화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2003, 419쪽).

많이 사랑받은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부모 봉양을 미루는 것으로 구술되었다.²⁵⁾ 그런데, 문제적인 것은 모든 자녀가 부모가 편애한 자녀가 자신이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 ③ “만날 우리 키울 때 가운데 딸만 좋아하더니 가운데 딸네 집 가라.”
 (...) “만난 성한테만 잘해 줬으니 성한테 가 보지 여기 왜 왔소.”
 (2-8:143)
- ④ “아부지, 저 둘째 아무 거시기네 가 봐요.” 하 이거 참 또 간다. 거가
 서 또 며칠 있으면, “아무거시기네 집에 좀 가 봐요. 밤낮 여기만 있
 을라구 하지 말고.” 막내딸한테 가면 또 막내딸두, “아 큰 언니한테
 가슈.” (3-2:86)
- ⑪ “아이구 아버지 명랑하지마는, 제 동상 아무개한테는 가며는 근구도
 거것하고, 애린 것도 밋 없고 하닌게 잘해 드릴 겁니다. 다음에는 저
 한투로 오이소.” (8-6:76)

딸들은 이미 출가하여 독립 가정을 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기에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봉양을 미루는 정당화 근거로 내세웠다. 딸이 여럿일 경우, 딸들은 부모를 반드시 모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며, 형편이 나은 자매가 모셔야 한다며 봉양을 미루는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했다(⑪). 이는 노인 세대에 의한 구술 결과이므로, 딸들 자신의 음성을 그대로 재연했다고 볼 수만은 없고, 딸의 ‘불효 근거’에 대한 부모 세대의 ‘상상’ 결과로 이해할 여지를 갖는다. 아들을 둔 경우 다른 형제에게 부모를 미루는 경우는 없었는데, 대체로 외아들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며,²⁶⁾ 함께 살면서 불효하는

25) 딸들이 홀아버지 봉양을 서로 ‘미룬’ 경우는 딸이 등장하는 총 30편 중에서 ③-⑥, ⑧, ⑨, ⑪, ⑬, ⑰, ⑳, ㉑, ㉒, ㉓, ㉔ 등 총 13편이다.

26) 아들이 등장하는 총 7편 중에서 외아들로 설정된 경우는 모두 5(㉒, ㉓, ㉕-㉗)편이며 ㉑과 ㉒에서는 아들이 셋인데 재산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본래부터 불효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모습을 보일지언정 다른 아들에게 미루지는 않는 것으로 구술되었다. 이는 아들이, 그 중에서도 장자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발상이 당연시 되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딸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균등하게 증여받았으므로, 부모 봉양도 딸들 공동의 몫이라고 주장하거나(⑧),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자녀가 모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구술되었다(⑤, ⑨). 즉 재산의 증여 여부나 양적 비중에 따라 부모 봉양의 책임이 결정된다는 것을 ‘자녀의 상식’으로 간주한 것이다.

- ⑧ 아 그런디 큰 딸이 가마안히 생각해보닝개 저럴 다 쫓이면 지가 모실 수 있는디 즈이 동상두 쫓이닝개는[청중:옳지. 또 시기허능구먼.] (4-5:108)
- ⑤ “아 아버지는 왜 큰 딸이라구 더 주구, 둘째 딸이라구 더 주구, 나는 그 중에서 조금 짤라 주고 무슨 낮쪽으로 내게 오시유?” (3-2:241)
- ⑨ “아버지, 이왕이면 가운데 동생한테 가 더 쉬시오” “왜?” “아, 암디논 좋은 게 그리로 갔은개 그리로 가 더 기시오(계시오).” (5-3:458)

셋째, 부모의 재산 증여 이후에 딸들은 부모를 자연스럽게 홀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들인 경우는 재산 증여 이전부터 불효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초의 재산 증여 시점		편수 (총 37편)	백분율
딸을 둔 경우	가출 전 딸에게	②, ④-⑪, ⑬-⑮, ⑳-㉓	26 / 70%
	가출 후 양자에게	③, ⑫	2 / 5.5%
아들을 둔 경우	가출 전 아들에게	㉔-㉖	5 / 13.5%
증여 없음	딸	①, ㉗	2 / 5.5%
	아들	㉘, ㉙	2 / 5.5%

[표 3] 최초의 재산 증여 시점 분류표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부모를 홀대하는 딸이 등장하는 경우는 ②, ⑤-⑩, ⑬-⑲, ⑳-㉓으로 딸이 등장하는 총 30편 중 26편으로 전체의 70%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재산을 주지 않은 경우는 ③, ④, ⑫의 3편이며²⁷⁾ 모두 나중에 변함없는 효심이 입증된 양자에게 증여되었다.

아들을 둔 경우, 총 7편 중에서 5편이 부모가 기출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인데(㉔-㉖), 그 중에서 3편(㉗, ㉘-㉙)이 재산 증여 이전부터 불효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㉚과 ㉛의 경우는 부모가 원래부터 가난해서 증여할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설정되었다.²⁸⁾

미리 재산을 증여한 노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박대/천대/홀대 받는 과정과 이에 대한 부모의 사후적 후회는 부모-자식의 원만한 관계에 ‘돈’이 걸림돌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부모-자식 관계가 이익집단과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노인 세대는 재산 증여 후의 자녀의 변심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자에 대한 재산 증여 이유	해당 설화 분류 번호	편수	백분율
특별한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증여	④, ⑥-⑧, ⑪, ⑭, ⑯, ⑰, ⑱, ㉒, ㉔ ²⁹⁾ ㉚-㉜, ㉞, ㉟, ㊱, ㊲, ㊳, ㊴ ³⁰⁾ ㊵, ㊶-㊷ ³¹⁾	19	51%
딸들의 요구로 증여	⑬, ⑮, ⑰, ㉒, ㉔, ㉖, ㉘, ㉚	8	22%
생계 의탁을 위한 증여	②, ⑤, ⑨, ⑩	4	11%
미리 증여하지 않음	③, ⑫	2	5%
증여 없음	①, ㉕, ㉗, ㉙	4	11%

[표 4] 친자에 대한 재산 증여 이유 분류표

27) ③에서는 딸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생각이었지만, 딸들이 부모를 서로 다른 자녀에게 미루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8) 이인경은 ‘아들보다 양아들’의 구조를 지닌 이야기들은 ‘세 딸’이 ‘외아들’로 변이된 것으로 이에 따라 주제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비록 양자일지라도 아들이 딸보다는 낫다’가 아니라 ‘친아들일지라도 불효하는 자식은 소용이 없다’는 것으로 주제가 바뀐다고 보았다(2003, 421쪽).

29) ㉒는 이야기 속에서 미리 재산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되었으므로 이에 포함시켰다.

30) ㉗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을 받은 아내가 아들의 집에 의탁해 있었고, 정황상 재산권 소유가 아들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이므로(나중에 노모가 쫓겨나 보따리 장사를 했음)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31) ㉘, ㉙에서는 자식의 불효로 집을 나오면서도 일정한 재산을 나눠준다.

노인 세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시집갈 때 재산을 분배해 주는 등 연로한 부모의 자연스러운 처신으로 상정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총 19편으로 전체의 51%). 둘째, 딸들의 요구에 따른 것(22%), 셋째, 생계를 의탁하기 위함(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입장에서 재산 증여는 자연스런 처신이었지만, 자녀 입장에서 재산 증여 이후의 노인 부모는 일방적으로 봉양해야 할 불편한 존재이자, 잉여 가족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³²⁾ 또한 부모 세대는 ‘노후’에는 재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증여하고 무일푼이 된 노인은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하는 과정을 문제적으로 보여주었다.

- ㉠ **자연스러운 재산 증여** : ㉠ ‘나이가 늙어진 뒤에는 재산이 뭐 별 자기한테 필요가 없어. 인제 상속을 해서 아들한테 뭐 넘겨되어야 할 꺼 아녀?’ (3-1:368)
- ㉡ **딸들의 요구로 재산 증여** : ㉡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끼네 논문서 그거 얼마만 나를 주시오.” (8-6:102)
- ㉢ **생계 의탁하기 위해 딸들에게 재산 분배** : ㉢ ‘그런디 할멈이가 딱 죽어버린게는, 참 어디가 저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읊은게 딸네집이 이 딸네 집이 가 먹고 저 딸네 집이 가서 먹을라고 논 열마지기씩 나눠 준 것이여, 딸한티로.’ (6-8:174)

재산 증여를 요청하는 이야기 속의 딸에 대해 구연자는 ‘딸은 도둑’이라는 세간의 견해를 첨부했으며,³³⁾ 딸들이 서로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

32) 2005년 여성개발원의 성인 2,925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족실태 조사’에 의하면 노인 돌봄 비용에 대한 의견으로 노인을 모시는 가족이 부담(44.6%), 노인 스스로 충당(13.7%), 모든 형제가 부담(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부양에 대해서도 능력 있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고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의견(20%)은 부모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의견(26%)보다 응답률이 낮았다(조병은, 2007, 62쪽.).

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0).³⁴⁾ 생계 의탁을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은 자녀가 있는 노인이 독거하는 문화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던 구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³⁵⁾ 노인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판단으로 노년을 의탁하기 자녀에게 재산 증여를 했다. 그러나 자녀는 재산을 상속 받은 뒤 부모를 오래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내색을 하고, 이는 노인이 가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재산 상속 이후 딸들이 ‘홀아버지’를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홀대한다는 것은 공통되었다.³⁶⁾

노인 세대가 집을 나설 때 재산/돈을 지닌 경우도 있지만(①, ④, ⑤ 등),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무일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⑦, ⑩ 등), 돈이 없이 가출한 것으로 설정되기도 했다(⑩ 등). 노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집을 나왔을 당시 자식에게 상속한 것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⑤).³⁷⁾

재산분배의 시점과 이유는 딸들이 원해서, 노년이라 재산 분배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딸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도 하지만, 양아들에게 분배를 하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 딸들이 양아들이 차지한 재산을 도로 찾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부모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들은 양아들에게 재산분배가 되지 않도록 미리 양아들의 가정 내적 위상을 약화시키거나 축출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33) ⑧ ‘딸년이라는 거는. 도둑이래, 고마 어예든간에. 이 딸이 삼 형제가. [청중:도둑이라 캐가 되나?] 도둑이지 어예노? 딸이사. 도둑 이래 가히 고마. (...) 살림을 마구 딸한테 분배로 해 달라는 게래.’(7-9:1057)

34) ⑤에서는 맏딸에게 제일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자녀간 불균등 증여가 이루어졌다.

35) 이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구전설화가 채록된 80년대 당시의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 조사, 또는 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6) ⑤ ‘침에 가서는 한동안은 참 잘 해 줘. 그냥 먹을 때 먹여 주고 입힐 때 입혀 주고 그래. 잘해주는데 차차 차차 시일이 가니까 당최 천대가 막심하거든’(3-2:241)과 같이 자녀들은 처음에는 잘 모시다가 노인 부모와의 동거가 장기화 될수록 이를 꺼리며 구박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37) ⑤ 이래구 게 오붓하게 사는 거 땅을 몇 마지기 팔어 가주구, 자식보다 더 많이, 자식은 썩썩 주구서는 죄 팔어 가지고서 보따릴 싸 짊어지구 거쳐 없이 나갔지. (1-2:235)

자녀의 입장에서 ‘노인 부모’는 일방적으로 봉양해야 할 불편한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며,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부모를 불편해하는 태도를 현저히 드러냈다. 딸들은 재산 증여 전에는 재산을 양도하면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으나, 증여 이후에 이를 반드시 무시했다. ‘재산 증여’가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오히려 저버리는 요소로 나타난 것이다.³⁸⁾ 아들의 경우에는 재산의 증여와 무관하게 부모에 대한 봉양을 부담스러워하고 관심 자체를 갖지 않거나, 부모의 고민을 헤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재산 증여가 완료된 ‘노인 부모’는 자녀 세대에게 ‘불편한 존재’, ‘동거하고 싶지 않은 잉여 가족’으로 간주된 것으로 ‘상상’되었다.

그러나 현대인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효행 이유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랑/애정, 보은/보답, 가족화합, 부모에 대한 존경, 의무감/책임성, 부모에 대한 희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화적 전제와는 달리 ‘재산 상속’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효행 이유로 나타났다.³⁹⁾ 이는 부모 봉양을 불편해 하고 재산 증여를 효행의 직접적 동기로 전제

38) 노인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절대다수인 88.5%가 자녀들에게 대접받기 위해 재산 소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조병은, 2007, 61쪽). 이는 구전설화 채록 당시인 80년대의 설화 구술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자녀가 있는 40세 이상의 기혼남녀 384명(전북 정읍과 그 인근)을 대상으로 상속의식을 연구한 결과, 부모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부모와의 애착 정도에 있었으며,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생전에 상속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세대간 갈등이 높은 경우에는 사후 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방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상속을 하며 자녀의 출생순위나 성별보다는 부모와의 유대감이 상속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균형 상속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영소·김양희, 1999). 그러나 이는 실제 상속과는 구분되는, 상속에 대한 ‘견해 연구’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9) 성규탁,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14권 1호, 한국노년학회, 1994, 55~61쪽. 그러나 연구 시점이 20여년 전의 것이므로, 당대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가 일상을 잠식하고 물질주의에 대한 숭배가 가속화되며, 불안의식을 자극하는 금융 위기가 일상 담론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돈’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통제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구전설화의 내용과는 상이한 결과다. 이는 90년대와 80년대라는 시대적 차이, 또는 채록된 구전설화의 표집 성격의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구연 설화의 특성상 이러한 자녀의 입장은 노인 세대의 구술자에 의해 ‘조율된 음성’으로 언술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 자녀의 입장 그 자체라기 보다는 ‘노인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입장’에 대한 노인의 시선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설화에서는 자녀들이 노인 부모를 불편해하거나 봉양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가출을 결행하지만, 이는 노인의 자존감에 대한 상상적 반응일 뿐, 현실 맥락에서 그대로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화라는 이야기 텍스트는 현실적으로는 ‘차마할 수 없었던’ 가상의 의사표현의 공간이자 ‘상상의 공론장’으로 기능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효의 수행 주체로서의 자녀 세대가 들려주는 효행의 의의에 관한 직접적인 음성과 이야기라는 상상적 구조물에 투영된 노인 세대의 자녀의 효 인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단순한 세대차나 시차를 넘어선 현실과 상상 사이의 거리가 가로놓여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 불효 자녀에 대한 ‘노인 부모’의 감정과 처신의 수사학: 교감과 동일시로서의 구술재연

해당 유형에서 자신에게 불효하는 자녀와의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려는 ‘노인 부모’는 존재하지 않았다.⁴⁰⁾ 자녀들의 불효와 구박/박대/천대,⁴¹⁾ 또는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 채거나,⁴²⁾ 서운함을 느끼고,⁴³⁾ 무시당했

40) ③에서는 할아버지의 가출 여부가 불분명하다. ④에서는 딸의 박대를 받던 중 술을 마시고 길을 잘못 들어서 양자네 집에 가게 된다.

41) ⑤ ‘당최 천대가 막심하거든’ (3-2:241); ⑬ ‘그 구박을 하는 거 같애.’ (3-3:791); ⑯ “예랄 거 내가 죽더라두 까짓 느이 뭐 딸네 집이서 안 으더(언어) 먹는다.” (2-6:39); ⑰ ‘설움이 참 영 자재하기 짝이 없어.’ (7-5:448); ⑳ ‘한 달도 못돼서 설움을 받는다.’ (7-16:428); ㉑ ‘딸도 고만 부모를 팔시를 하는 기라.’ (8-6:102); ㉒ ‘그 늙은이가 뭐 먹을 것은 없고 헌 게 저 부모기다 푸대접을 허고 인자’ (5-7:626); ㉓ ‘아 이놈이 부모한테 어떻게 불효짓만 하구 그래는지 아이 그 아주 찍일 수도 없구’ (1-2:235)

다고 느끼거나,⁴⁴⁾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여긴⁴⁵⁾ ‘노인 부/모’(대체로 노년층 홀아버지)는 반드시 동거를 거부하고 집을 나서는 결단을 내렸다.⁴⁶⁾ 이때 부/모는 자녀의 집 이외는 의지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⁴⁷⁾ 정처 없는 방랑을 떠나거나⁴⁸⁾ 고향을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며,⁴⁹⁾ 장삿길

- 42) ②, ③, ④, ⑥-⑨, ⑪, ⑫, ⑮, ⑰, ⑳, ㉑, ㉔-㉖, ㉘, ㉚, ㉜. 예) ㉗ ‘한 달두 못 못 돼서 두채 딸 딸네 집이루 갔으며언 허는 눈치가 선연허어?’ (4-5:618)
- 43) ㉙에서는 유람을 가서 빚을 지고 온 홀어머니가 고민해도 아들이 무심하자, 섭섭해서 집을 나와 방천에서 운다.
- 44) ㉚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일꾼’으로 소개하자 ‘속에 마 불로 붙어 [주먹을 밀어 올리며] 이런 게 마 바친다.’ (7-3:395)
- 45) ①, ⑩, ⑰ ‘한 달 쯤 있어본 깨로 뜻이 안 맞아.’+‘다시 고민 있기가 싫어.’ (7-16:553)
- 46) 노인이 집을 나간다는 설정 자체가 없이 양아들과 사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5-2:556). ㉚는 딸과의 불화 자체가 생략되었다.
- 47) ⑨의 경우 며슴살이 하는 당질을 찾아가, 환대를 받고 지내다 양자로 삼는다. ⑫, ⑰에서는 딸들에게 ‘푸대집’ 반자 양아들집으로 간다. ㉗는 본래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 친구와 의논하고, ㉘에서는 부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 48) ⑤ ‘한숨만 푹 쉬구서는 참 부지거쳐 방랑생활을 떠났단 말야. 방랑생활을 떠났어요.’ (3-2:241); ⑥ ‘이걸 팔아 가지고 절로 갈밖에 없다’; ⑮에서는 딸들이 서운하게 대하자 증여한 문서를 되찾아 집을 나선다. ‘그래 땅 문서를 고만 뺏었어. (...) 보따리 해 거머지고 불원천치하고 간다.’ (7-16:639); ⑰ ‘담보짐을 싸가지고 부지없이 가는 길인데’ (7-5:448); ㉑ ‘돌아댕기다 가각질해가(過客 노릇해서) 댕기고, 가각질로 해요.’ (8-3:325); ㉒ ‘내가 차라리 고민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죽어야겠다.’ (7-16:429); ㉓ ‘그 아부지가 나가게 똤단 말여. 나가서 그 사방 댕기다가’ (3-4:750); ㉔ ‘보따리 메 지고 간다. 가는 냥으로 가다가 죽으면 죽고 사면 살고 가본다고’ (7-6:694); ㉕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가다가다가 얻어먹다가 굶어죽든지 둘이 나갑시다. 이렇게 다 마다하니 어떻게 살겠오.” (5-1:511); ㉖ ‘어디 나서서 얻어 먹드라도 내가 나서 불어다 먹는다구서 보따리를 싸 짊어지구 나셨다. 나서서 부질없이 떠나는 판여.’ (3-1:370); ‘돈을 마카 몽전해가 깊이 딱 보따리에 싸 짊어지고 전부 다 없애뿌고 자기 질 마침(만큼) 그저 개갑게(가볍게) 짊어지고 마 지망 없이 마 떠난다.’ (7-3:396). ㉚는 친자의 푸대접을 받고 길에서 양며느리를 만난다는 정황으로 보아 아들 집을 나온 것은 분명하다.
- 49) ⑦ ‘동냥하능 게 목적이 아니라 세우러 보내 세월 보내능 게 목적이.’ (4-4:678); ⑪ ‘이건 거지걸이 해갖고 가닌께’ (8-6:77); ⑬ ‘고만 나갔어. 얻어 먹으러 나갔단 말 이야.’ (3-3:791); ⑮ ‘이리저리 댕기문서 걸식을 허구설라네’ (2-6:39); ⑰ ‘해가 지 모 칩을(추울) 때는 저 어데 산에 가서 양지 가서 누우서 잠도 자고’ (8-2:466); ㉓ ‘게 나와서 갖대기를 짊고 가는 기여. 자꾸 얻어 먹으며 웨텔 가는다’ (3-2:406); ㉜

이나⁵⁰⁾ 유람을⁵¹⁾ 떠나고, 아들을 구하러 떠나는 것⁵²⁾으로 구술되었다.⁵³⁾ 딸들의 박대에 대한 언급이 없이 길을 떠나는 것으로 설정된 경우도 있으며,⁵⁴⁾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⁵⁵⁾

자녀의 불효는 부모가 가출을 결심할 정도로 심각한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노인은 ‘살해 욕망’까지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지만, 결국 불효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옴으로써 사실상, 가족 관계의 단절을 선언했다.⁵⁷⁾ 노인 부모는 자신을 불편해 하는 자녀와의 동거를 감내하기보다는 유랑·결식·자살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였다. 이는 노인 부모 세대에게 자녀의 ‘불효’란 생존의 위기로 간주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 밑다/싫다:** ⑨ ‘다시 고만 있기가 싫어.’ (7-16:553)

‘보따리나 싸 짊어지구 빌어먹으로 나가야겠다 자식이라구 어디 민구 살겠나.’ (1-2:235)

- 50) ⑧ ‘원래 여비 마침 가져 있을 만침 가져 있어. 가지고 보따리에 싸질머지고 붓장사를 나가는데’ (7-16:553)
- 51) * 재산을 가지고 유람을 가는 경우: ④ “애이 날나리 보따리 걸어지구서 팔도유람이나 가자.” (3-2:87); * 재산 없이 유람을 떠나는 경우: ⑩ ‘애이 빌어먹을 놈의 것, 조선 팔도 귀경이나 험다고 험다고 보따리를 하나 딱 집머지고는 인자 나섰어. 걸어댕기는디, 인자 죄우든간 조선 팔도 귀경이나 험고 죽는다고 딱 나서서 돌아댕기는데’ (6-8:175)
- 52) ⑧ ‘노자좀 장만해 가지구서 아들이나 함 번 찾아 본다구.’ (4-5:108)
- 53) ⑭의 경우는 딸들의 요청으로 재산을 분배해 주고 양자를 들여 동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딸들의 구체적인 박해나 가출 상황은 설정되지 않았다.
- 54) ⑭의 경우, 결말에서도 효성스런 양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없다.
- 55) ㉗ ‘자기 신세 한탄을 하구서 산중이 목덜 매러 갔어. 자살을 자살 기도허구서. 막 목을 매서 죽을라구 목을 맬라구 허는디’ (4-5:618)
- 56) 이와 관련해 노인의 가출을 다룬 선행 연구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주로 가족구성원의 가출에 관한 주로 ‘청소년 가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실제로 노인의 가출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인지, 학적 조명이 결여된 결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57) ㉞에서는 집을 나온 노인과 부자관계를 맺은 양아들이 배우자를 구해주는데, 양어머니 역시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집을 나온 여자이다. 이 여성은 동거 가족이 된 후에 며느리에게 땅을 살 정도의 큰돈을 준다.

㉞ ‘아 이놈이 부모한테 어떻게 불효짓만 하구 그래는지 아 이 그 아주 썩일 수도 없구. ‘에이 난 혈수 없으니깐 보따리나 싸 짊어지구 빌어 먹으러 나가야겠다 자식이라구 어디 믿구 살겠나.’ (1-2:235)

* **죽고 싶다(자살 충동):** ㉟ ‘야 이까짓 거, 내가 어디 나서서 논두렁을 비구 죽든지 밭두렁을 비구 죽든지. 죽는 게 낫지, 너희들한테 가서는 안 되겠다.’ (3-3:791)

㊱ ‘아 이거보다도 내가 차라리 고만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죽어야겠다.’ (7-16:429)

㊲ 자기 신세 한탄을 허구서 산중이 목덜 매러 갔어. 자살을 자살기도허 구서. 막 목을 매서 죽을라구 목을 뺄라구 허는디 (4-5:618)

* **기 막히다/ 분하다/부아가 난다/괘씸하다:** ㊳ 기가 맥혀. 그래 그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하기 한이 없어. 내가 난 딸자식도 저 모양이여. (3-2:87)

㊴ ‘실그머니 부아가 난단 말여.’(2-6:54) + ‘아 그게 또 부(분)하단 말여.’ (2-6:55)

㊵ ‘아 그런게 늙어살다 본게로 괘씸하고 있들 못허것어.’ (6-8:175)

* **실망이다/서운하다/낭패다:** ㊶ ‘괘세를 한단 말야. 그래 도리가 있어? 한숨만 푹 쉬구서는 참 부지거처 방랑생활을 떠났단 말야. (3-2:242)

㊷ ‘친정 아버지가 생각허닝께 낭패여.’ (4-5:108)

㊸ ‘그래 하마 그걸 들으이 좀 서운크든.’ (7-16:638)

㊹ ‘까짓 놈, 저저 자식 키아가 저저 소용 없는 자식이다.’ (7-3:394)

* **서럽다:** ㊺ ‘생각해여 보이 설움이 참 영 자재하기 짝이 없어.’ (7-5:448)

㊻ ‘방천에 가 앉아 자꾸 운다. (...) 점두룩 거기 앉아 울었다.’ (7-6:652)

* **상속을 후회한다/ 딸은 소용없다:**

㊼ “출가외인이라드니 딸자식은 출가하면 남이로구나.”(3-4:77)

㊽ ‘나가(내가) 잘몬 했구나! 이러나 저러나 양제로(에게) 줄 거로(것을), 양제 아들로 졌으모(졌으면) 아무래도 이렇지는 았을 낀테(건테). 딸

로 쥐 놓은게네 내 재산 없이고(없애고)...’ 체면에 양제 아들한테는 갈 수가 없고 이래서 저 영감이 참 내똥는 기라(나섰는 거라). (8-2:465)

* **같이 살 수 없다:** ⑦ ‘큰 딸한테 가서 뭣 달 있어봉 게여. 못 살겠어. 눈 치가 닳어.’ (4-4:678)

⑩ ‘예랄 거 내가 죽더래두 까짓 느이 뭐 딸네 집이서 안 으더(얻어) 먹는다.’ (2-6:39)

⑪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가다가다가 얻어먹다가 굶어죽든지 둘이 나갑시다. 이렇게 다 마다하니 어떻게 살겠오. (5-1:511)

* **언술 차원의 감정 표현 없음:** ③,⁵⁸⁾ ⑭, ⑮, ⑰, ⑱,⁵⁹⁾ ⑳, ㉑, ㉒, ㉓, ㉔

자녀의 불효를 경험한 노인의 감정 상태는 밉다/싫다, 죽고 싶다, 기막히다/분하다/부아가 난다/괘씸하다, 실망이다/서운하다/낭패다, 서럽다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속을 후회한다/딸은 소용없다, 같이 살 수 없다 등의 이성적 판단을 내렸다. 해당 유형에서 불효하는 자식을 직접 꾸짖거나 당당하게 효를 요청하는 노인 부모는 존재하지 않았다. 노인 부모는 불효로 인한 고통을 혼자만의 감정 문제로 수용했으며, 간혹 친구에게 털어놓을지언정, 자식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자식에게 이미 재산을 증여했기 때문에 효를 요구할 권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부모 자신이 자식에게 ‘효도’에 대한 요구를 떳떳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노인 부모에게서 성인 자녀에 의한 ‘불효’는 부모-자식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관계 단절의 징후로 수용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58) ③은 ‘딸보다도 수양아들이 더 좋거든.’ (2-8:144)

59) ⑱는 딸이 박해하는 상황 자체가 생략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모의 감정 표현도 구술되지 않았다.

4. 비혈연 가족의 형성과 해체·재결합 과정을 통해 본 가족 갈등의 요인과 노인 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 수준

해당 설화는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을 통해 ‘혈연’이 가족 구성의 유일한 방식이 아닐뿐더러 가족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절대적 통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친자보다 효성스러운 양자’라는 상상 구도를 통해 실현되는 바, ‘재산 증여’를 매개로 불효하는 친자에 대한 실망을 심리적으로 위안하고 보상하기 위한 체계로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재산 증여를 둘러싸고 ‘친자’가 ‘양자’를 견제하고 파악을 종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해체’와 ‘돈’이라는 이익의 상관성, 나아가 노인 부모 세대의 자식에 대한 효의 기대수준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재구할 수 있다.

4.1. ‘입양의 계기: 아들에 대한 기대 심리, ‘효’를 둘러싼 ‘부-자’ 관계 계약

노인 부/모가 자녀(딸 하나/셋,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두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들이 없이 딸만 두었을 경우(총 30편), 딸이 몇 명인지와 상관 없이 양자를 두는 것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상정한 경우다(총 22편).⁶⁰⁾ 아들이 없으면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언급이 직접 제시되기도 하며(⑮, ⑲, ㉓), 마을 사람들이 양자들 들여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를 제안하여 설득하기도 한다(⑰, ㉘).

⑤ ‘게 인저 아들이 없으면 그 지금이나 옛날이나 좀 걱정이야?’(3-2:241)

⑬ ‘에-딸만 3형제 낳거든. 이제 아들은 하나도 없고. 그대 그 할 수 없이 마효자를 양자로 들여세웠어.’(3-3:790)

60) ①, ③-⑥, ⑧, ⑪-⑬, ⑮-⑱, ⑲, ㉑-㉒, ㉕-㉘, ㉚ 등. 이 중에서 ③과 ②는 양자를 두는 이유 없이 이미 양자가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 ㉓ 아들이 없으께 이전에는 양자를 해야거든. 그러이 양자를 하나 떡 했단 말이라. (7-16:428)
- ㉔ “자네 그러지 말고 죽은 뒤에 딸을 주던지 누구를 주던지 허지 당초 그러지 말라고. 양아들 허드래도 그러지 말라.” (5-7:225)

⑤와 같이 아들이 없으면 딸이 많아도 걱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기도 하며, ‘딸 셋이 수양 아들만 못하답니다’(③)라고 서두를 떼면서 딸의 효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한다. 이때 양자의 요건으로 ‘착함’을 거론하기도 했다(④).⁶¹⁾

둘째, 대를 잇기 위해(⑩, ㉕), 봉제사를 위해(⑭), 딸의 출가 후 노후를 의탁하기 위해(⑦) 양자를 둔 경우다. 이는 사실상 위에서 거론한 22편의 설화에서 ‘말해지지 않은’ 입양의 논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 맥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 아무래도 ‘내가 물로 옳기(옳게) 대야 죽어도 옳은 죽음을 하지’⁶²⁾ 싶어서 조캐 아들로 양지(양자)를 시키(시켜). (8-2:465).
- ㉕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문 아주 후사를 끊으니까 양자래두 해야 할 거 아니냐?” (3-2:405)

셋째, 딸이 불효하자 아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양자를 두는 경우다(②).

- ② “에이, 이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아. 내 속으로 나온 딸자식두 날 싫대는데 시영아들이 뭐가.” (2-2:765)

61) ④ ‘이 가난한 아이가 아주 착해서 수양아들을 하기 삼었어.’ (3-2:86)
 62) 家統을 바르게 이어야지, 내가 죽어도 옳게 죽는 것이지. (『대계』 8-2권 465쪽 각주 1)번.)

넷째, 자식에게 홀대받는 부모가 자신을 돌봐주고 환대하는 이를 만나 양자로 삼는 경우다. 이 경우, 자녀와 불화하거나 쫓겨나 우연히 만난 젊은이를 양자를 두기도 한다(9⁶³), ⑩, ③③-③⑦). 친자에 대한 노인 부모 세대의 실망과 자녀 세대에 대한 돌봄에 대한 기대, 부모를 필요로 하는 고아 청년(또는 그 부부)의 요구가 일치했기 때문에 (29, ③4, ③6), 이들은 무리 없이 동거를 수락하고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 즉 가족 구성에 대한 상호 요구와 필요, 호감에 의해 비혈연 동거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다.

- ㉔ 평생에 부모로 한 번 거늘어 났으면 카는 그 마음으로 평생에 마 잠 안든 담에는 잇었부리도 안하고 하루 한 전씩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한 번 모시보꼬’ 들 내외가 만날 글타. (7-6:691)
- ㉕ “아유 천만예요. 즈는 조실부몰해서 이런 어른들이 좀 오시면 아주 펍 반갑습니다. 즈 사랑두 좀 지켜 주시구 기श्य요.” (1-2:236)

다섯째, 딸이 아니라 아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들이는 경우가 있다(총 7편). 아들이 있으면서도 양자를 둔 이유는 외아들을 두었기 때문이거나(32), 아들의 불효로 가족 해체가 이루어졌고, 양아들의 효행으로 그를 아들로 삼으려는 의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31, ③③-③⑦).

4.2. ‘친자-양자’간 갈등: 파양 계기로서의 ‘재산권 분쟁’

딸만 셋을 두었다가 양자를 들이는 경우, 파양을 통해 가족 해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아들만 두었을 경우의 입양이 아들과 헤어지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반면, 딸을 둔 경우에는 부모가 집을 나오기 전에 양자를 들이고 다시 파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시 구술자에 의해 분명히 파양으로 지목된 경우, 집에서 양자를 다시 쫓아내 사실상의 파양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양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 가족이 해체된 경우로

63) ⑨는 딸의 박대로 집을 나온 아버지가 머슴살이 하는 재종 당질을 찾아가서, 효성에 감동해 양자로 삼는다.

구분되는데, 그 계기는 대체로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양자에게 재산이 양도될 것을 염려하고 질투한 딸들이 과양을 유도하거나(①, ⑮, ⑲), 쫓아내거나(⑤), 스스로 나가게 만든 경우다.⁶⁴⁾ 양자에게 재산이 양도될 것이 싫어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자, 양자보다 딸이 낫다고 여겨 아버지 스스로 과양을 결심하기도 한다(⑮). 경우에 따라서는 딸들이 어머니를 동원해 과양이 성사되도록 행동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⑧).⁶⁵⁾ 이 경우 양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스스로 집을 나간다. 양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딸들이 과양을 유도하기도 한다(⑦).

⑤ 이눔을 봐 두면 자기들한테 소득이 없을 것 같단 말야. 분배가 안 돌아. 그래 언제든지 참 동생내외를 들볶어. (...) 그래 인자 아들 내외..., 헐 수 없이 쫓겨 났어. (3-2:241)

⑦ 그 양아덜 양며느리게 이렇겠싸닝께 부쳐서(부대껴서) 살 수가 육거던? 그러닝께, 그러나닝께 인제 그 아덜얼 과양해 보낼라면 그냥 내보내지 양쿠 다소 뭇 좀 쥐서 그렇게 내보냈을 테지. 과양을 했어. (4-4:677)

⑧ “도저히 누님허구 매부허구 나럴.. 잘못허면 내가 인제 질내(계속) 여기 있다는 깨딱허다 죽게 되닝께 저는 나가야졌입니다.” (4-5:107)

⑮ ‘내가 참 낳은 자식이구 그 양자라는 건 우똥지간에, 예, 친척에게 데려왔드래두 자기가 낳은 것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야. (2-6:37)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과양을 요구하는 딸들의 요구를 수락했다. 양자

64) ⑬, ⑭ ⑳에서는 수양아들에 돌아간 재산이 아까워 나가게 만드는 이가 외아들이다. ㉑에서는 딸들의 반대로 양자가 재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양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재산을 받지 못한 뒤로 분가 또는 집을 나간 것으로 상정한 채 이야기가 이어진다. ㉒에서는 딸들의 반대로 양자에게 재산을 주지 않자, 가난해서 남의 집살이를 하러 나갔다가 객지로 간다.

65) 이인경은 ‘아버지보다는 대개 어머니 쪽에서 양자가 아닌 친딸에게 재산을 상속하고픈 욕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화자들이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딸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2003, 419쪽).

도 자식이지만, 부모는 친자가 양자와의 동거를 거부할 경우 파양을 선택하거나 양자의 가출을 방관했다. 양자는 친자보다 못하다는 발상이 파양의 정당화 근거로 동원되기도 했다(16).

구연자는 파양 당사자의 감정이나 의견을 구연하지 않았으며(①, ⑦), 설명을 하더라도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을 ‘순함’의 표지로 인식했다(16).⁶⁶⁾ 이러한 태도는 청중에게 ‘착하다’, ‘효자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둘째, 양아버지가 재산을 딸들에게만 양도하여 받을 게 없게 되자, 양자는 살 도리가 없다고 여겨 집을 나가는 경우다(17, 18, 23).

⑱ 영감은 고마 딸, 살림을 고마 분배로 다 해 좇베렸어. 다 해 좇부이, 양재 아들이 며 있어야 되지. 먹고 사지 모해가주구 고마 이 양재아들은 고마 둘내외간에 고마 저 산중으로 가가주 숲경을 꼽고 (7-9:1057)

㉓ 인제 할마이는 이놈의 딸만 주고 싶고, 양아들은 하나도 안 주고 싶어. 그러이 영감은 불편하지. 아무래도 아들이 더 나올킨데 딸만 자꾸 준다 칸다. 그래 딸을 서이를 그만 살림살이를 분배를 해주고, 양아들은 암꾸도 안쫘단 말이라. 그러이 양아들이, “거 할 수로 없다. 우리는 고마 내우간에 어디로 떠나자.” 그래가주구 저 산골티로 고만 남 모르기 떠났단 말이라. (7-16:428)

양자는 부모의 재산을 받지 못하자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집을 떠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자가 ‘재산’ 때문에 부모와 동거한 ‘계산적 면모’의 소유자인 것으로 전제되지는 않았으며, 부모로부터 자식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은 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더 이상 생계 확보가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어, 양자의 가출은 ‘납득할 수 있는 처신’으로

66) ‘그래니 이 양자한 메뉴리나 자식이 매우 순해. 그저 뭐 애비가 이래람 이래구 저 래람 저래구. 이렇게 뭐 불평이 읍서.’ (2-6:38)

간주되는 가운데 이야기가 지속되었다.

셋째, 양자로 들인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양했다. 혈연 자녀일 경우, 자신을 박대하고 불효하더라도 ‘죽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처신은 하지 않았다. 반면에, 양자에 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파양하는 것을 별다른 문제없이 기정사실로 구술하는 것도 특징이다.

- ① 그게 양아들한테 있어보니 아무 재미가 없어. 거 손이지. (...) ‘에라이 끼 안되겠다 이거. 아들 파양을 해서 내빼리야 되겠다.’ (8-6:75)

위의 모든 경우에서 양자는 가족 내에서 정당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결코 친자와 동일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친자의 박대를 받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출할지언정 친자를 쫓아내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에는 가족 갈등이 발생하거나 부모의 마음에 차지 않을 경우,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입장에서 가족 관계 유지의 가장 강력한 동인이 ‘혈연’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양자의 불안한 사회적 위상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⁶⁷⁾

4.3. ‘효’의 기대 수준: 혈연을 넘어선 ‘배려’와 ‘보살핌’에 대한 기대

부모가 친자와 결별하여 양자와 새로운 동거 가족을 형성하는 계기는 ‘효’의 지속성과 진정성이다. 재산 증여를 기점으로 친자에 대한 실망을 경험한 이후, 집을 나온 노인 부모는 우연히 파양했던 양자를 만나 동거

67) 이와 같은 양자의 불안한 지위는 해당 설화에서 자기 자식의 생존보다 양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도의 ‘효심’을 보여야만, ‘진정한 자식’으로 간주되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혈연을 중시한 부모가 바로 그런 친자로부터 사실상 버림받는 이야기를 통해, 혈연을 넘어선 돌봄과 배려에 대한 부모 세대의 기대와 요구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을 형성하거나, 부모를 필요로 하는 청년 부부를 만나 함께 산다. 노년층 부모는 이들의 변함없는 효성과 진정성에 감동하여 전재산을 증여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사실상 비혈연 동거가족이 재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노인 세대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과 요구를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후세를 남겨 가계를 보존하려는 혈연적 연속성의 요인보다는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줄 수 있는 ‘지속적 보호’에 대한 노년의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해당 유형에서 부모가 ‘효’라고 인지하는 양아들 내외의 노인에 대한 대우나 처신의 내용은 노인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의 표현(보살핌과 배려, 다정한 대화), 동거 제안, 부/모로 호명하기, 배우자를 구해주기, 자기 자식을 죽여도 감싸 안기, 재산분배를 거부하기, 배우자 구해주기 등이다. 이 중에서 공통요소는 관심과 보살핌, 배려이며, 극단화된 형태는 ‘자기 자식을 죽여도 감싸 안기’이다. ‘효’에 대한 노인의 인지 요소는 노인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관심의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질문과 대화로 구현되었다. 양아들 내외가 노인에게 보이는 효행이나 효심 중에서 노인이 재산을 양도하거나 효도로 인정할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술에 취해 양자의 아기를 죽게 했을 때, 이를 감싸 안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⁶⁸⁾

노인에 의해 자신의 아기가 죽었음을 최초로 발견하는 이는 양며느리다.⁶⁹⁾ 며느리는 사실을 알고도 노인에게 감추려 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배려’를 보였다. 사실을 안 남편도 아내의 처신에 동조하거나 고마움을 포함으로써, 양부에 대한 변함없는 ‘배려’를 보였다. 아들이 죽은 것을 처음 발견한 이는 며느리인데, ‘원통하다’는 감정표현이 제시되었지만, 남편이 돌아오자 뒷동산에 금이 있으니 파보라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아기의 무덤을 파도록 ‘배려’하기도 했다(㉒). 이때에도 며느리는 ‘당체 아버님 있

68) 해당 설화는 [표 1]에서 ‘양손자 살해’로 분류했다.

69) 양손자 죽이기 모티프가 있는 설화 중에서 양며느리가 먼저 아기를 발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2:329;

는 디서 얘기하지 말라구'(5-2:557)라며 배려했다. 물론, 양아들이 먼저 양부의 자식 살해를 알게 되어 이를 덮어주는 경우도 있다(㉑).⁷⁰⁾ 이 경우에도 아내가 아이의 죽음을 문제 삼아 노인을 미워하거나 축출하자고 제안하여 가족 해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⁷¹⁾ 부부는 한결같이 아이를 살해한 양부를 포용하며, 노인이 기대하는 진심어린 '효심'을 보여주었다. 양아들 내외가 이를 애써 감추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경우에도 이들은 노인의 부주의한/비의도적 살인이 아니라, 양아들 내외의 '효'에 관심을 집중했다.⁷²⁾

이처럼 해당 유형 중에서 최고의 효행 수준을 보여주는 화소는 '자기 자식을 죽인 양부모를 감싸 안기'다. 이는 총 37편의 설화 중 25편(5쪽 표의 ①-③, ㉑-㉒)으로 68%에 해당한다. 설화에서 이는 '효'로 호명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노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된 내용이며, '자식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에게서 상상된 '효'에 대한 기대 수준의 극단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⁷³⁾ 즉 노인 입장에서 '진정한 자식', '진정한 효'란 자기 자식의 생명보다 더한 '애정과 관심, 배려'로서의 '봉양'과 '존중'의 차원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것은 노인의 생존에 대한 불안과 자식에 대한 의존성의 극단화된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양아들 내외의 효에 감동한 노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인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70) <5-1:511>에서는 '애기 죽은 것은 걱정이 아니고 마누라가 와서 영감을 쫓아 버리면 어쩔꼬 허고, 애기 죽은 것은 또 낳으면 되지 하고 걱정을 안 했어.'(5-1:512)라고 제시된다.

71) 오히려 사실을 안 부인은 "아이고 어찌다가 그랬다요? 어찌다 죽어버렸으면 갖다 묻고 또 낳으면 되지 않소."라며 아이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들더러는 애기가 무단시 아파서 풍이를 앓다가 죽어버렸다'(5-1:513)고 이야기한다.

72) '그래 착하다 하는 바람에 동네서도 아 수양아버지가 아이를 깔고 몽게 죽인 것도 알것다. 참 동네서두 칭찬을 해.' (3-2:89)

73) 이인경도 이에 대해 '양자 부부의 지극한 효심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과장된 수사임은 물론'이라고 해석했다(2003, 417쪽).

첫째, 양아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증여한다. 친딸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노후자금을 증여하기도 하며(④),⁷⁴⁾ ‘딸 자식은 소용없다’면서 전재산을 주기도 했다(⑫).⁷⁵⁾ 딸에게 주려 했던 재산을 증여하거나(③), 이미 주었던 재산을 되찾아 양자에게 전격 증여하기도 했다(②, ⑤, ⑬, ⑭, ⑯). 딸로부터 재산을 되찾기 위해 다른 자녀에게 양도한 더 좋은 땅문서와 바꿔주겠다며 딸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②, ⑥, ⑨, ⑩). 불효한 딸에게 미리 문서를 빼앗아두었다가 양자의 효심에 감동하여 문서를 주기도 했다(⑮). 딸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경찰(⑬)/지서(⑦)/관(⑫)의 도움을 빌리기도 했다. 관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재산 양도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도 하며(⑧), 죄의 고백 없이 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법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었다(⑤).⁷⁶⁾

- ② “느께 들째 딸네 꺼만 못해. 땅이. 그래니까 내 땅문설 바꿔줄께니깐 어이 가져 오너라.” (2-2:764)
- ⑬ ‘그 경찰이 인제 전부 해서 딸네 둘이 재산을 다 찾아서 그 양아들 다 주고. [청중:아.] 그래 잘 살더라.’ (3-3:792)
- ⑮ 그 시아바이 그 문서하고, 그걸 문서를 다 방매(放賣)를 써기 가주고, 큰 가대(家垓)를 고만 집하고 땅하고 고래등 글은 거를 사가주고 [큰 소리로] 고만 땅하고 거부가 돼부러. 그래가 잘 살드라 그러. (7-16:641)
- ⑫ ‘관가를 가서 인제 그 얘기를 다했어. 해가지고 그 엘라 본 아들이 조

74) “야 흠비일수록 내가 돈이라는 건 좀 준비를 해야겠다.”(3-2:86)고 향아리에 엽전을 넣어 땅에 묻었던 것을 양아들에게 증여한다.

75) ②에서는 증여의 이유로 ‘착하다’는 것이 거론되었다. ‘효=착하다=선’으로 간주하여 노인에 대한 보살핌과 돌봄이 도덕적·윤리적 평가로 치환된 것이다.

“너같이 착한 애가 없어. 딸네 내 뱃속으루 나온 것두 이런데 넌 하여큰 그래니깐 이거 가주구 추수해 먹구 살면 당대 먹구 살꺼야. 이거 해 먹어라.” (2-2:768)

76) 대부분의 경우 노인의 유아 살해를 실수로 여기고, 이를 죄로 간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 사람 그 어른내 깔어 죽잉 건 아주 묵인해 버리구서는 법이서 그렇게 하더랴.’ (4-4:681)

끔 짓고 있는 놈을 고놈 뺏어다가 고리 강 돌려주게 됐다고 그렇게 되었어.’(5-7:628)

재산의 양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으로 상상되었다. 양아들은 수양아버지를 일평생 모시고 장례도 지내준 것으로 구연됨으로써, 명실 공히 ‘자식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④ 에 이 그 부모가 돈 갖다 준걸로 참 그 토지를 사 가지구서 평생 즈 수양아버지를 일평생 모시고 응 굶은 지봉조차 해 가문서 장례를 지내구서 기구조차 지내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3-2:89)

둘째, 이들을 ‘확실한’ 양자로 삼는 경우다. ④의 경우 구연자는 ‘아들’과 ‘수양아들’을 구분하면서 수양아들이 자식보다 수양아버지를 더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자 진정한 아들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⁷⁷⁾ 이미 양자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⑨에서는 재산을 받은 뒤 자신을 박대하는 딸과 달리, 자신을 보살펴 준 당질이 아들을 죽인 자신을 감싸 안자, 딸에게 주었던 문서를 빼앗아다 주고 양자로 삼음으로써,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다.

셋째, 재산에 대한 증여 없이 가족 관계를 지속해가는 것만으로도, 양자에 대한 신뢰와 효에 대한 기대 욕구를 드러낸 경우다(⑭, ⑮).

⑮ “그러이 그 아들이 남의 자식을 아들 삼고, 남우 딸을 며느리 바가(봐서) 내 며느리 삼고, 그 대대로 나는 산따느(산 판에는) 그 후대꺼정 그럴 수 없이 효자라.” (7-3:399)

넷째, 양아들의 효에 대한 보상을 양부로부터의 재산을 증여가 아니라

77) “인제는 내 자식이 자식이다.” 그래 착하다 하는 바람에 동네서도 아 수양아버지가 아이를 깔고 뭉게 죽인 것도 알것다. 참 동네서두 칭찬을 해.’ (3-2:89)

마을 사람,⁷⁸⁾ 또는 하늘에서 금을 받는 경우다.⁷⁹⁾ 특히 금을 발견한 경우, 이를 효에 대한 하늘의 보답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었다(⑰-⑲, ㉑, ㉓ 등). 특히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양(시)부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보이는 양자 내외를 지지하는 사회적 시선은 죽은 아이의 소생과 함께 금의 발견이라는 보상 형태로 구현되었다.⁸⁰⁾

- ⑰ 그기 바로 생금쟁이라. [청중:하이구 그 참 아주 그래 부모를 섬기 놓이.[청중: 부모 섬긴 효부라 하늘이 도운 기라.] 효부가 정신이(정성이) 있인께. [청중: 그래 말이라.] 그 참 천시로 하나님에 보아셨는 기지요(보셨던 것이지요.) 그래 도왔는 기지요.(7-5:452)
- ㉑ 부모를 그리 보호하고 그리 잘 섬긴께네 그래 지가 살기가, 참 끝끝내 잘 살아요. 그리 그렇더라 캐. (8-3:327)
- ㉓ “그래갓고 나중에 그 사람이 아주 그렇게 부귀영화를 했대요.” (5-1:513)

아들을 죽인 양부를 포용한 양아들이 효도를 다하고 초상 장례를 지내 준 뒤에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기술함으로써, 효행이 부귀영화의 원인이 된 것처럼 구현하기도 했다(㉓). 아이가 소생하거나 생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견한 양아들 내외는 이로 인해 부자가 되었고, 구현자는 이를 정성에 대한 보답, 효부에 대한 하늘의 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성을

78) ⑰에서는 양손자를 실수로 죽인 양부가 죄의식 때문에 죽으려고까지 하나 양아들 내외가 만류한다. 노인이 늙어 죽고 동네에 소문이 나서 효자, 효부상을 받는다. 그래서 ‘그래 마고자라카는 명칭이 안직도 있다.’ (8-6:83) ⑰에서는 노인의 재산 양도 없이 마을에서 효자로 인정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된다. ‘양중에는 그 메누리 그 아들이 소자 발포했지. 소자문 아주 발포했잖아. 그것두 얘기야 그것두.’ (1-2:331)

79) 해당 설화는 4쪽의 [표 1]에 ◆로 표시했다. 예컨대, ⑥에서 마을의 이장이 마효자의 논에만 누리가 들지 않을 거라는 꿈을 꾸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구현자는 이를 ‘옥황상제의 표창’으로 간주했다.

80) 아이도 소생하고 금도 얻는 경우는 4쪽의 [표1]에서 각각 ○와 ◆로 표시했다.

보였다. 금을 발견하여 양아들의 아기를 죽인 것이 상쇄된 것처럼 구연되기도 했다(㉓).

위의 과정은 양자가 노인 양부모에 대한 배려와 헌신의 태도가 친자의 죽음을 압도할 정도로 강했을 때만이, 재산 증여의 형태로 대표되는, 가장 확실한 자식의 지위를 확보하게 해주었음을 보여준다.

5. ‘재산증여’를 매개로 본 노인 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 수준과 설화적 구술 규약

‘이야기하는’ 행위는 이미 ‘이야기되는 내용’과 ‘가치’에 대한 동의와 존중의 태도를 함축한다. 비록 담화 정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취할 경우에도, 이는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 표현되는 입장의 문제이므로, 이야기라는 텍스트의 가치에 대한 원천적 승인의 태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절대 다수의 구술자가 노인 세대에 의해 구술된 ‘411-5’ 유형의 내용은 노인 부모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수준과 가족관을 노인의 입장에서 관철하여 상상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군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유형은 구연자와 구연 대상 인물의 세대가 대체로 ‘노인 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해당 설화에 대한 구연자의 감정적 동일시는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물론 이야기 속의 시대 배경은 남아선호 사상이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침윤되어 있었고, 출가외인의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상정되었지만, 구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 이와는 상이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연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대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비교하면서 구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 차이의 조건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한 것은 불효 자녀에 대한 노인 부모 세대의 불신과 효도에 대한 갈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산의 증여’를 둘러싼 문제에서 노인 세대의 판단은 친자 여부나 친자의 가정 내적 서열이 아니라 ‘효도’의 질적 문제, 즉 자녀들의 부

모에 대한 처우에 좌우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 세대는 자신에게 효성을 다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고, ‘효의 수행’과 ‘재산 증여’의 문제는 혈연성이라는 매개를 압도할 정도로 강한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구연자도 이에 동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설화는 노인 세대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기로서 ‘효’의 실천 여부를 상정했으며, 친자의 생존을 압도할 만큼 노인 부모를 ‘배려’하는 것을 ‘진정한 효’로 간주함으로써, ‘효’도에 대한 강한 갈망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자녀 세대는 ‘재산 증여’를 둘러싼 형제간 분쟁, 친자-양자간 갈등을 보여주었으며, 재산 증여 이후에 부모를 홀대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효’가 혈연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부모-자식 간의 관계 윤리나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경제 요인’에 의해 무시될 수 있는 불안한 요소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야기를 통해 구연된 상상적 구조물일 뿐, 실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친자를 실수로 죽게 한 양부모에 대한 배려가 친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압도한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진정한 효’로 인식한 것은 자식 세대에 대한 효의 기대 수준에 대한 극단의 상상적 소산일 뿐, 인류의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노인 부모는 자녀에게 홀대받고 부담스런 존재로 인식되었을 경우, 가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에서는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때문에 사회적 수치나 모멸감을 감수하는 경우가 우세하다. 따라서 해당 설화 유형은 노인 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 수준과 가족관을 상상 형식으로 재연함으로써 노인의 욕망과 기대를 구성하고 재연하는 상상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설화 구연자 90%가 60대 이상인 노인 세대인 만큼, 노인 세대의 효에 대한 기대 수준과 자식의 효심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분명하다.

이러한 과정은 구술 과정에 구연자의 입장과 시선이 개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제 구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해당 설화는 입양을 통한 친자-양자간 갈등, 부모의 애정과 재산 증여를 둘러싼 자녀간 갈등, 부모-자식간의 상호 기대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가족 구성원간 갈등을 함축함으로써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을 둘러싼 다기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연자 모두는 ‘진정한 효심을 보여주어야만 참된 자식’이라는 단순한 주제로 단일하게 확정함으로써, 가족 관계 윤리에 대한 근원적 사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역으로 해당 설화 유형은 노인의 자식에 대한 기대 수준을 통해 ‘자식’에게 위탁하는 ‘노년의 삶’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노출시키고 있다. 설화라는 ‘이야기’ 형식에 담긴 구술자의 상상적 재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대화 국면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대계』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504쪽.

문영소·김양희, 『한국가족의 재산상속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권 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9.

박영민, 『老妓의 경제 현실과 섹슈얼리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집, 2011, 157~192쪽.

송현애,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과 ‘노년기’ 연구-가정학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권 3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8, 79~99쪽.

원영희·모선희, 『한국노년학의 사회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노년학』 28권 4호, 한국노년학회, 2008, 753~772쪽.

- 이경옥·허소영, 『포커스 집단을 통한 도시 노인의 삶의 질 개념 연구』, 『한국노년학』, 28호 2권, 한국노년학회, 2008, 269~290쪽.
- 이수곤, 『조선 후기 시가에 나타난 노년 여성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집, 2011, 57~86쪽.
- 이신숙, 『노년기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9집, 2009, 547~562쪽.
- 이인경, 『구비설화를 통해 본 老後의 삶과 가족』, 『구비문학연구』 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409~450쪽.
- 장휘숙,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길-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전략』,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및 워크샵』, 2007, 15~30쪽.
- 정명숙,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7호, 2007, 249~273쪽.
- 정영숙, 『한국여성노인의 잘 나이들기: 성숙한 노화 개념의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집, 2011, 5~56쪽.
- 조병은,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5집, 한국가정관리학회, 59~75쪽.
- 최기숙, 『노년기 여성적 삶의 공론장, 17~19세기 여성 대상 壽序』,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집, 2011, 87~130쪽.
- 최기숙, 『‘효/불효’ 설화에 나타난 가족 관계의 문학적 상상과 문화 문법에 관한 비판적 독해: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431-1)’ 유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115~156쪽.
- Foucault, Michael, 『감시와 처벌』, 나남, 오성근 옮김, 2003, 1~464쪽.
- Thane, Pat, edited, *A History of Old Age*, Thames & Hudson Ltd, London: 2005, pp. 1~320.
- Minois, Georges, 박규현·김소라 옮김, 『노년의 역사』, 아모르문디, 2010, 1~560쪽.

Abstract

The Donated Property from Aged Parents and Dis/Reorganization of Family

-An Analysis on the Aged Generations' Anticipation toward the Children and their Family Values focusing on the Folklore Type No. 411-5, 'an Adoptive son than bloody daughter'-

Choe, Keysook

According to the senior's cultural/social position is changed in this aged society otherwise pre-modern traditional society, the aged generation is suffering from the crisis of self-regard. This paper aimed to re-organize of the senior-parents discourses with the viewpoint of anticipation toward their children and values of the family through analyzing oral folk tales. This paper focused on th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senior-parents and children when it occurred in inheritance of property and analyze the meaning of money as a qualitative changes amongst family members, senior-parents psychology and imagination which shows their desire to filial duty, as it were, strong expectation of mental royalty and material supporting from their children than blind bloody tie. To explain this issues, this paper analyzed the Folklore Type No. 411-5 'an Adoptive son than bloody daughter(filial duty of adoptive son)' amongst *Hankuk kubimunhak daekye*.

Undutifulness of biological child occurred when their living together with their senior-parent was extend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or when they inherited a fortune from their parent. The child-generation judges that the more the child have a property, the

more they should have responsibility toward their parent. However, psychologically they were positioning themselves as a child who suffered from lack of love from parent, by doing so rationalized their undutifulness toward their parents. The parents who succeeded to all of property to their child-generation were regarded as “surplus-family’ by their children, and encountered economical, social crisis instantly. However, they received this painful experience as their internal emotion. Even they decided to run away from home without money, but they never revealed their complained feelings to their children and never demand to filial duty.

In this Folklore Type 411-5, the senior-parent prefer to roaming, begging and committing suicide than living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who dislike or felt uncomfortable with them. This means, in fact, disorganization of family. Moreover, they adopt the other young man who showed hospitality toward them, because they regarded such attitude as serious filial duty. This means reorganization of family. In such process, the senior-parent showed their extremely-elated anxiety; they demanded to the man who became their adoptive son valued serious filial duty than their love toward their baby. On the other hand, when some problem occurred with regard to property right between bloody-child and adoptive one, the one demanded to dissolution of adoption or made dissolution of adoption. For that reason, it occurred another forms of disorganization of family.

90% amongst the storytellers of that type of folk tales are old generation over 60's. As a result there were reflected anticipation value and anxiety of their child's undutifulness toward themselves

and a imaginative logic which worked in the narratives. The Folklore Type No. 411-5 touched the topic ‘what is the serious filial duty’ and answered that it should embrace the concepys of caring, affecting, and considering toward their parents emotionally, psychologically, and materially. And also this type of folk tales showed that the ‘donated property from parent to child worked as a direct opportunity to dis-rgan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family, by doing so it touched that there should existed some affective anticipation toward parent based on humanistic viewpoint and caring system amongst family members.

Key words : folktale, filial duty, unfilial child, family, old person, donated property, family conflict, adopted son, biological child, blood tie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